

#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 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OO은행(이하 "은행")이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이하 "BankSign")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와 은행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2.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3.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5.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운영정책 및 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업무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합니다.
6. "가입자"라 함은 BankSign을 이용하기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7.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이라 함은 BankSign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축한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인증 체계를 말합니다.

8. "은행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사용자 인증(로그인)과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앱을 말합니다.
  9. "공동인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기,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앱을 말합니다.
  10. "인증서 비밀번호"라 함은 로그인 및 전자서명 시 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가입자 본인만이 아는 정보(PIN, 패턴 등) 또는 생체정보(지문 등)를 말합니다.
  11. "이용매체"라 함은 가입자가 은행앱과 공동인증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은행공동인증업무준칙,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또는 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이용대상)

본 BankSign의 이용대상은 개인으로 합니다.

### 제4조 (BankSign 이용계약)

BankSign 이용계약은 개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성립합니다.

1. 은행앱에서 BankSign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하고, 공동인증앱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인증서 발급절차를 완료한 경우
2. 다른 은행에서 BankSign을 이용중인 고객이 당 은행의 휴대폰 본인확인, 기 설정한 BankSign 인증수단 로그인 등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 제5조 (서비스 종류)

BankSign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BankSign 이용신청

2. BankSign 이용은행 추가
3. BankSign 인증수단 관리
4. BankSign 이용해지

## 제6조 (인증서 관리)

- ① 인증서는 가입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은행은 인증서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인증서는 가입자별로 1개만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가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인증서는 자동 폐기됩니다.
-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갱신절차는 없습니다.

## 제7조 (은행과 가입자의 의무)

- ① 은행은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 및 그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은행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BankSign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인증업무의 양도, 양수, 합병
  3. 은행공동인증업무준칙
  4. 인증서에 대한 정보
- ③ 가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인증서 발급신청
  2. 인증서 폐기신청
- ④ 가입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

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은행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가입자는 BankSign 이용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3자의 가입자 정보 부정사용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8조 (BankSign 이용시간)**

- ① BankSign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은행이 정한 기간 동안 BankSign 이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BankSign 이용범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이 될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 ③ 제1항의 BankSign 이용 일시 중지 또는 제2항의 이용범위별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1개월전 은행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9조 (BankSign 일시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BankSign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BankSign 제공이 어려운 경우
  - 2.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BankSign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기타 은행이 BankSign을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이용매체 및 USIM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해 BankSign 이용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10조 (BankSign 이용제한)**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BankSign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BankSign 가입 및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BankSign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6. 은행이 BankSign과 관련된 보안절차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7. BankSign 이용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의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8.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BankSign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 수단별(PIN, 패턴, 지문)로 5회 연속 잘못 입력한 경우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BankSign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3. 가입자의 BankSign 이용이 부정 또는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
  - 5. 가입자의 이용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BankSign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삭제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BankSign 이용 제한,정지,폐기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 **제11조 (BankSign 이용해지)**

- ① 가입자가 은행앱 또는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BankSign 이용해지를 요청하고 은행이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BankSign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 ② 은행은 가입자가 BankSign 이용해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인증서의 부정 또는 비정상 사용 등으로 BankSign 이용이 정지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해지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 ① 가입자는 BankSign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거래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제13조 (수수료)**

개인 가입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수수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1개월전 은행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14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전자서명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서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입자가 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④ 가입자로부터 이용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은행은 그때로부터 제3자가 그 이용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15조 (개인정보보호)

은행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BankSign 서비스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 제16조 (정보수집 및 이용)

① 은행은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BankSign 서비스를 위해 BankSign 이용신청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BankSign 이용해지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모바일 기기 식별정보(Android ID, Device ID, Random UUID), 휴대전화번호

② 은행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하는 타은행, 금융ISAC, 감독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8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



자적 장치 및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 및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및 통지해야 합니다.
- ④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BankSign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전자적 장치 또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통지)**

은행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처럼 BankSign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합니다.

### **제20조 (정보의 제공)**

- ① 은행은 BankSign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은행앱 화면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제1항의 정보를 전자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 **제21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제22조 (약관 외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공동인증업무준칙,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